

2015년 제6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2.17.(목) 9:00, 집현실
- 참석위원 : 총 8명
 - 위원장 : 부원장 (신창호)
 - 위 원 : 7명 (연구실장 및 센터장)
- 심의안건
 - 정원외직원임용규칙 일부개정(안)
 - 직원승진규칙 일부개정(안)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직원대외활동규칙 일부개정(안)

□ 심의결과 :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1건(징계위원회운영규칙)

□ 심의안건 및 주요내용

- 2016년도 정원외직원 인건비 인상률(3%)을 정원외직원임용규칙 제13조 (보수)의 <별표2>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에 반영
 - 임금인상률 반영기준 : ‘정액 + 정률’ 방식을 적용하되 임금 총 인상률 3% 인상
 - ▶ 정액 : 50%(546천원/연보기준)
 - ▶ 정률 : 50%(1.5%)
 - 반영방법 : 2016년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에 정률 및 정액 인상률 반영
 - 시행일 : 2016. 1. 1.부터 시행
- 인사규정 제24조(증진의 제한) 개정사항을 직원승진규칙 제5조(승진임용 제한)에 반영
 - 시행일 :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

- ‘박원순법’ 관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수행과제 요구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징계의 종류)의 ‘강등’ 포함
- 징계위원회운영규칙의 ‘징계양정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강화(정직 이상)

※ 수정의결 사항

- 징계위원회운영규칙의 ‘징계양정세부기준’의 ‘1.복무위반의 바.항(2)성 추행과 (3)성희롱·성매매를 (2)성추행·성희롱·성매매로 통합 수정의결
- 시행일 :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 직원대외활동규칙의 대외활동 횟수 및 시간 제한 사항 신설

- 제4조의2 (대외활동 횟수)
- 대외활동 횟수 및 시간 제한

현 행	개 정 안
-	월 3회·6시간

- 시행일 : 2016. 1. 1.부터 시행

붙임 1. 2016년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 1부(별도보고)

2. 직원승진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직원대외활동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붙임2] 직원승진규칙 신구조문대조표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승진임용 제한) ① (생략)</p> <p>1. (생략)</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u>날부터</u>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정 직 - <u>12월</u></p> <p>나. 감 봉 - <u>6월</u></p> <p>다. 견 책 - <u>3월</u></p>	<p>제5조(승진임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u>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부터</u>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정직, 강등 - 1년 6개월</p> <p>나. 감 봉 - 1년</p> <p>다. 견 책 - 6개월</p>

[붙임3]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u>해임</u>, <u>정직</u>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u>해임</u>, <u>강등</u>, <u>정직</u>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p>

징계양정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1) 강간 및 강간미수, 성폭력	○								(1) 강간 및 강간미수, 성폭력	○						
	(2) 성추행			○						(2) 성추행·성희롱·성매매			○				
	(3) 성희롱						○			(3) <삭제>						<삭제>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편법집행 등 부정사용, 관리소홀						○			가. 예산의 편법집행 등 부정사용, 관리소홀						○	
	나. 예정가격 누설				○					나. 예정가격 누설				○			
	<u>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u>						○			<u>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u>						○	
	<u>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u>						○			<u>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u>						○	
	<u>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u>						○			<u>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u>						○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자.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청렴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장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장직 이상	감봉 이상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	○		○			1. 100만원 미 만의 금품·향 응 요구, 정 기·상습 수 뢰·알선시 : 해임이상 2. 고의·과 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	○		○	

현행							개정안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			
3.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			3.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00만원미만금 품수수시(능동) : 해임이상

[붙임4] 직원대외활동규칙 신구조문대조표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4조의2(대외활동 횟수) 제4조의 대외활동 횟수는 월 3회·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